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85
----------	-------

발의연월일 : 2025. 1. 20.

발 의 자 : 조인철 · 박희승 · 정준호
민형배 · 정일영 · 박용갑
박지혜 · 허 영 · 어기구
이정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NS·플랫폼을 통하여 확산되는 의약품, 화장품 광고는 허위·과장 표현, 질병 치료·효능 암시, 가상 의료인 등장 등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치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 출석 및 의결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구조에서는 위원 교체, 안건 누적, 회의 일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심사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그 사이 국민 건강·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광고가 장기간 노출되는 구조임.

이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광고에 대하여 신속한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여 심의 공백 발생 시에도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전단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로,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를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2. 「약사법」 제61조의2 또는 제68조에서 금지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3. 「화장품법」 제13조에서 금지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4. 「의료기기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회의 등) ① ~ ③ (생략)	제23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 ----- ----- ----- -----.
<신 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신 설>	2. 「약사법」 제61조의2 또는 제68조에서 금지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u><신 설></u>	3. 「화장품법」 제13조에서 금
	<u>지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u>
	<u>해당하는 내용의 정보</u>
<u><신 설></u>	4. 「의료기기법」 제24조에서
	<u>금지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u>
	<u>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u>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